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4. 2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4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년 4월 13일
- 나. 제출자 : 강서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20년 4월 20일
- 라. 상정일자 :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의결(2020.4.24.)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 제안이유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인용 범명 또는 조례명 등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와, 한자어 순화 등 용어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 인용조문 정비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제명 등이 제정·개정·폐지된 경우 현행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

나. 용어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래어 표기” 등 일괄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3.20. 폐지)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5) 「물환경보전법」
-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 (2017.8.2. 폐지)
- 7)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 8) 「항공법」 (2017.3.30. 폐지)
- 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 교육청소년과, 기획예산과, 홍보정책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 생활보장과, 안전관리과, 건강관리과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0.2.12.~3.3) 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
- 3)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 4) 성별영향평가 : 가족정책과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배금택)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제·개정·폐지에 따른 인용조항 등을 적합하게 맞추기 위해 일괄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래어 표기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은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제명 등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현행법령을 일괄 정비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제11조, 제1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래어 표기” 등을 일괄 정비함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12조)
-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 및 인용조항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적합하게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 용어정비 등 자치법규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괄 정비함으로써
- 우리구 자치법규에 대한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붙임 관계법령 1부.

□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 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 지역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은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併記)하여야 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